

**안 동 풍 산 ~ 서 후 국 도 건 설 공 사
전 략 및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 · 범위 · 방법 등의 결정내용**

2023. 5

목 차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1.2 계획의 기대효과	1
1.3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1
1.4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 근거	2
1.5 계획의 내용	5
제 2 장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8
2.1 환경보전 목표 설정	8
2.2 생태면적률 대상사업 검토	10
2.3 자연경관 심의대상 여부 검토	10
2.4 건강 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 검토	12
2.5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검토	13
2.6 중점평가 사업 대상 검토	15
제 3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16
제 4 장 계획노선 구상안	19
제 5 장 대안의 설정	21
5.1 대안 선정	21
5.2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	21
5.3 대안별 비교·분석	22
제 6 장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30
6.1 평가 항목의 선정	30
6.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31
6.3 평가 범위 및 방법	39
제 7 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42
제 8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44
제 9 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48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안동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결된 지역에 중앙선철도 안동역사 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바, 기존도로 확장을 통한 교통소통원활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신도청 접근성 강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계획의 기대효과

- 경상북도 안동시 지역의 연계 교통 강화
- 국도 34호선의 교통량과 주변 개발사업의 유발 교통량 분산
- 교통 정체 최소화 및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정성 확보
- 도로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 서비스 수준 향상
- 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국가발전 향상

1.3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가. 추진 경위

- 2016. 11.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반영 최초 건의(경상북도→국토교통부)
- 2017. 12.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반영 확정(국토교통부)
- 2020. 04.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KDI)
- 2021. 09. 30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6호)
(본 노선 : 6차로 확장, 연장 11.2km, 사업비 1,776억, B/C 0.75, AHP 0.548)
- 2021. 11. 30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KDI)
- 2022. 0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02.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나. 향후 계획

- 2023. 04. ~ 05.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협의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심의 시행]
- 2023. 05. ~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 내용 공개(환경영향평가 항목 포함)
- 2023. 0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대구지방환경청)

- 2023. 07. ~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2023.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 2023. 08. ~ 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사항 공개
- 2023. 09. ~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 2024. 상반기 : 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절차 협의(대구지방환경청)
- 2024. 하반기 : 환경영향평가 협의

1.4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 근거

1.4.1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에 의거하여 평가준비서를 작성함

[표 1 - 1] 평가준비서 작성 근거

구 분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u>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u> (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u> 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 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u>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u>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u>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u>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표 1 - 1] 평가준비서 작성 근거(표 계속)

구분	내용
(시행령)	<p>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53조 제5항 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규칙)	<p>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概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1.4.2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심의를 실시함

[표 1 - 2]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근거

구분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p>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p>

1.4.3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금회 계획은 국도34호선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별표 2] “2.개발기본계획” 중 ‘마. 도로의 건설’에 해당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향후, 계획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 수립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3] “마. 도로의 건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표 1 -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마. 도로의 건설	2)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u>기본설계</u> 또는 실시설계의 <u>도로 노선을 선정하는 때</u>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표 1 -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5. 도로의 건설사업	<p>「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나목·사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p> <p>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p> <p>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p>	<p>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p> <p>나)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계획노선	○ 계획노선 총 연장 : 11.14km(확장 11.14km, 기존 4차로 → 6차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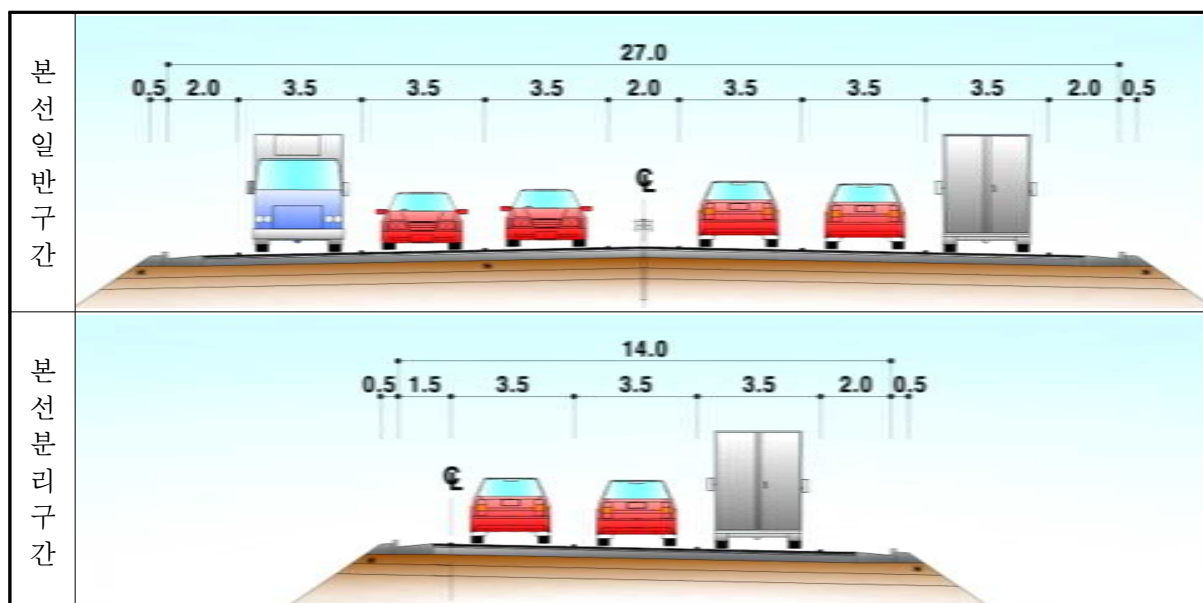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주) 향후 실시설계 수립시 계획노선 연장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5 계획의 내용

- 계획명 : 안동 풍산 ~ 서후 국도건설공사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 사업기간 : 착공 후 약 5년
- 사업내용
 - 연 장 : 11.14km(확장 11.14km, 기존 4차로 → 6차로 확장)
 - 설계속도 : 80km/hr
 - 도로의 구분 : 일반국도(34호선)
 - 계획폭원 : 27.0m
 - 교 량 : 1,214m / 12개소
 - 지하차도 : 560m / 1개소
- 사업비(예상) : 1,776.3억원(공사비 1,356.8억원, 기타 419.5억원)

[표 1 - 5] 본선 및 본선분리구간 횡단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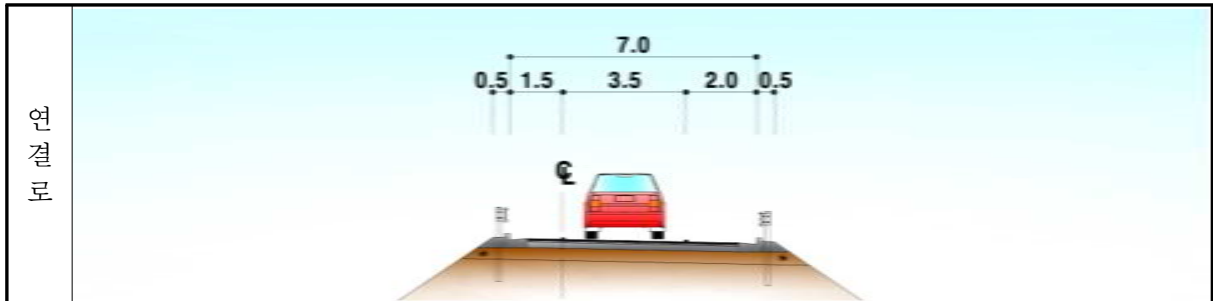
구 분	차로 수(차로)	총 폭원(m)	차로폭(m)	중앙분리대(m)	길어깨(m)
본선	6	27.0	3.50×6	2.0	2.0 × 2
본선 분리구간	3	14.0	3.50×3	-	좌측 1.5 우측 2.0



(그림 1 - 1) 본선 및 본선 분리구간 표준 횡단면도

[표 1 - 6] 연결로 횡단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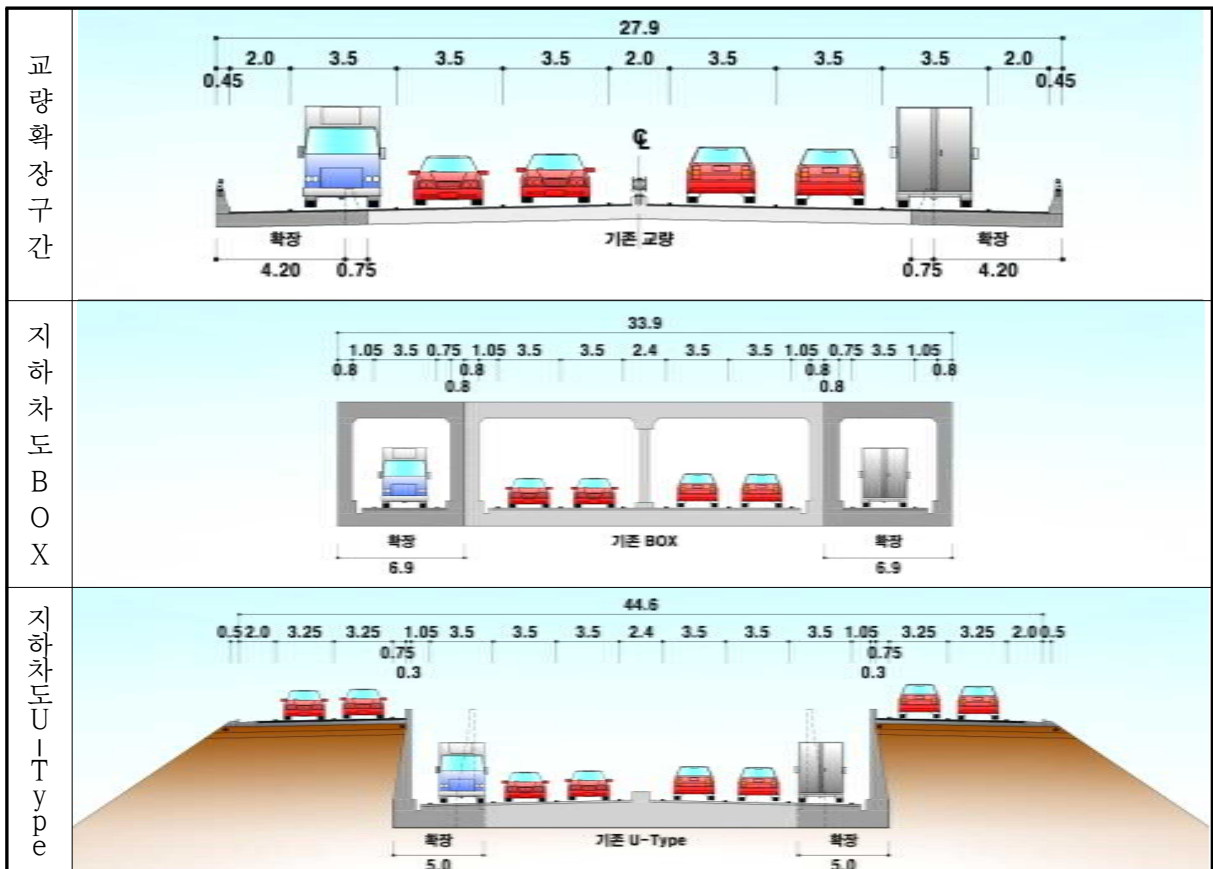
구 분	차로 수(차로)	총 폭원(m)	차로폭(m)	좌측 길어깨(m)	우측 길어깨(m)
연결로	1	7.0	3.50×1	1.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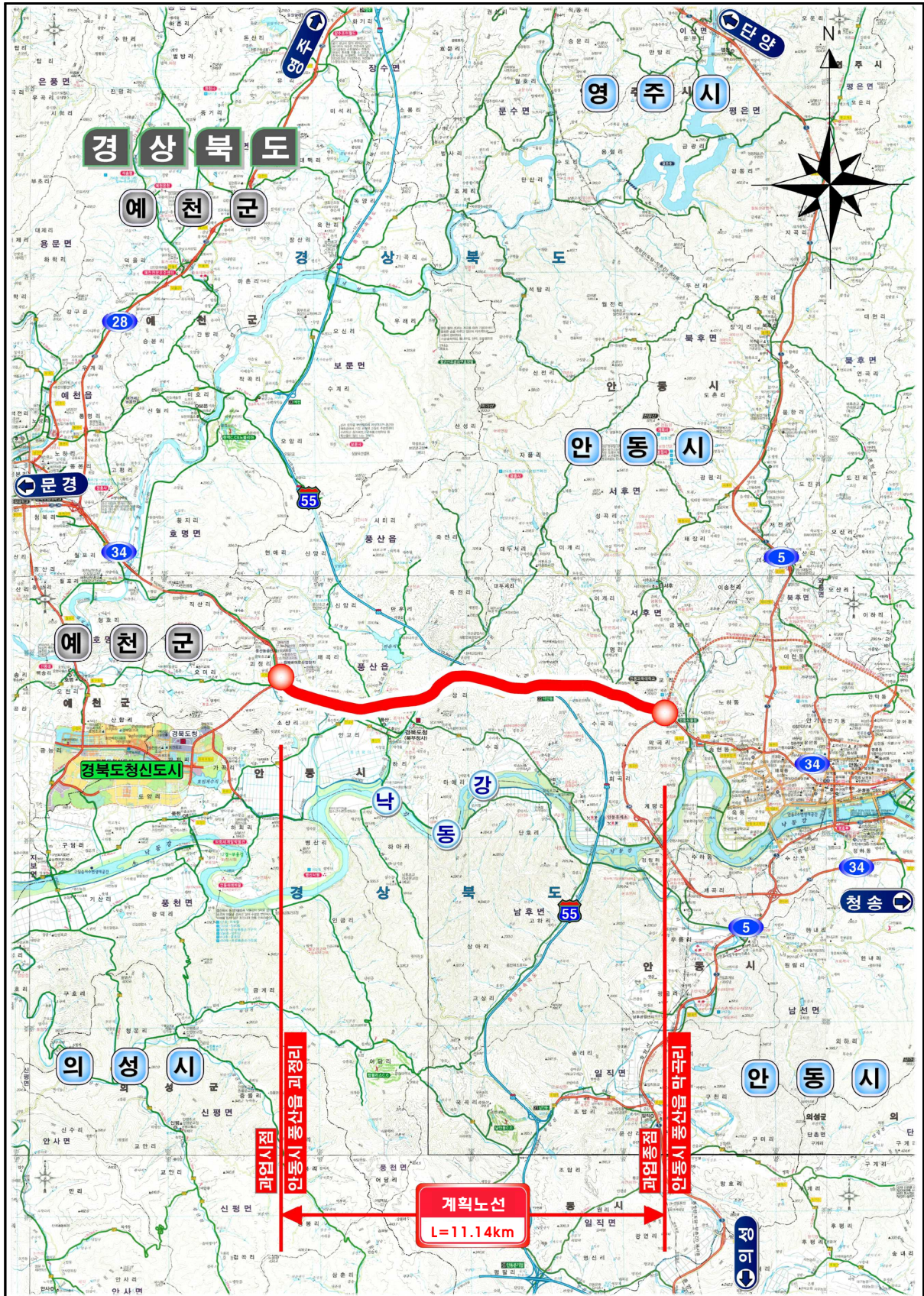
(그림 1 - 2) 연결로 표준횡단

[표 1 - 7] 구조물 구간 횡단구성

구 분	차로 수 (차로)	총 폭원 (m)	차로폭 (m)	중앙분리대 (m)	길어깨 (m)	방호벽 등 (m)
교량확장	6	27.9	3.50×6	2.0	2.0 × 2	0.45 × 2
지하차도 확장	6	33.9	3.50×6	2.4	0.75 ~ 1.05	0.8 × 6
지하차도 U-Type	8	44.6	3.25~3.50	2.4	0.75 ~ 2.0	0.3 ~ 0.75



(그림 1 - 3) 구조물 구간 표준 횡단면도



(그림 1 - 4) 계획노선 위치도

제 2 장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2.1 환경보전 목표 설정

- 환경보전 목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 1. 1, 환경부」를 참고하였으며, 환경보전 목표 설정은 금회 선정된 중점 평가 대상 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함

[표 2 - 1] 환경보전 목표 설정(1/2)

평가 분야 및 항목		환경보전 목표	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 계획의 적정성		-	-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의 목표 및 적합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 연계성 파악
나) 대안 설정 분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자연경관 및 수환경 보전 등의 평가지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별 시나리오 비교·검토시 설정한 평가 지표 타당성 확인
2) 입지의 타당성		-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보전 2등급 - 보전대상 : 식생보전등급 2등급 - 목표설정 : 상대 보전(제한적 보전) ■ 법정 보호종 - 보전대상 : 법정 보호종 서식지 - 목표설정 : 절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 확장시 가급적 양호한 식생구간 보전 ■ 주요 법정보호종 서식여부 확인 후 보전 대책 수립 필요
	지형 및 생태축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성토 비탈면 발생구간 - 보전대상 : 대절토, 성토 구간 - 목표설정 : 상대 보전(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지형 훼손 저감 및 비탈면 안정성 확보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카이라인 훼손지역 - 보전대상 : 자연경관 양호한 지역 - 목표설정 : 상대 보전(경관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 구조물 신설에 따른 주변 경관과의 변화 최소화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리·수문 ■ 오염총량 기준에서 설정한 기준 - 수계 : 낙동강 수계 - 연안특별대책지역 : 해당없음 - 목표설정 ▷ 안동시 할당부하량 협의기준 ▷ 연안오염총량 : 미해당 ■ 공사시 오수처리 방류기준 설정 - 관련규정 : 하수도법 - 목표설정 : 방류수 수질기준 ▷ BOD, SS : 20mg/L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부하량 검토 및 행위 제한 여부 확인 - 연안오염총량은 해당사항 없음 ■ 공사시 현장사무소 운영시 주변 수계 수질 보전 필요

[표 계속] 환경보전 목표 설정(2/2)

평가 분야 및 항목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 목표	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수환경의 보전	수질 및 수리·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환경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 환경정책기본법 - 목표설정 : 환경기준 Ia등급 ⇒ 토공사시 SS : 25mg/L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수계 수질 보전 필요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환경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 환경정책기본법 - 목표설정 : 환경기준 적용 ⇒ PM-10 : 100$\mu\text{g}/\text{m}^3$ 이하(24시간) ⇒ PM-2.5 : 35$\mu\text{g}/\text{m}^3$ 이하(24시간) ⇒ NO₂ : 0.06ppm 이하(2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및 운영시 지역주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목표기준 설정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소음·진동 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 목표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 공사장 소음 기준 적용 ⇒ 진동 : 대상지역별 기준 적용 ■ 운영시 환경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 환경정책기본법 - 목표설정 : 일반지역, 도로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별 기준 적용 ■ 교육시설 및 축사, 발파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 : 학교보건법 적용 ⇒ 축사, 발파 등 : 환경분쟁조정 사례를 참고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목표기준 설정 ■ 운영시 소음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목표기준 설정 ■ 관련 법령 준수 및 민원 발생, 보상을 위한 목표기준 설정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자연도에서 설정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대상 : 생태·자연도 1등급 - 목표설정 : 상대 보전 [가능한 보전하고 필요시 협의 기관과 협의하여 보전계획 수립] ■ 생태면적률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대상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목표설정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 보전을 위한 계획노선 선정 기준 설정 ■ 해당사항 없음

2.2 생태면적을 대상사업 검토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에 적용할 생태면적을 적용 대상사업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계획노선은 생태면적을 적용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표 2 - 2] 생태면적을 적용 대상 계획·사업

구 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비 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전략환경영향평가)	○ 가. 도시의 개발	해당 없음
	○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해당 없음
	○ 카. 관광단지의 개발	해당 없음
	○ 파. 특정지역의 개발	해당 없음
	○ 하. 체육시설의 설치	해당 없음
	○ 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해당 없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 1. 도시의 개발사업	해당 없음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해당 없음
	○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해당 없음
	○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해당 없음
	○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해당 없음
	○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해당 없음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2의 2]

2.3 자연경관 심의대상 여부 검토

-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대상사업 여부를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 예규 제726호)」에 따라 검토한 결과, 계획노선 근거리에 보호지역이 위치하지 않아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는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자연공원(청량산 도립공원) : 계획노선으로 부터 약 27km 이격
 -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 계획노선 및 안동시 관내 위치하지 않음
- 한편,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지 “보호지역 주변의 지역”에 대한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에 해당됨
 - 계획노선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5. 도로의 건설사업”에 해당되고, 연장 2km 이상의 도로를 신설(연장 50m 이상의 교량 포함)하며, 지방하천을 횡단하고, 개발사업 면적이 30,000㎡ 이상임

[표 2 - 3]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구 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비 고
보호지역 주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조건 미해당 ([표 2-4] 참고)
	○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보호지역 주변의 지역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조건 해당 ([표 2-5] 참고)

자료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환경부예규 제726호(2023. 4. 10)

[표 2 - 4] 자연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보호지역 경계로부터의 거리

구 분	구 분	경계로 부터의 거리	비 고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해당사항 없음
	최고봉 700m 이상	1,500m	27km 이상 이격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해당사항 없음
	습지보호지역	300m	해당사항 없음
생태·경관보전지역	최고봉 700m 이상	1,000m	해당사항 없음
	최고봉 700m 미만 및 해상형	500m	해당사항 없음

주) 1.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
 2. 보호지역이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거리기준을 300m로 함

자료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환경부예규 제726호(2023. 4. 10)

[표 2 - 5]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의 자연경관심의 대상사업

구 분	내 용	비 고
조건 : ①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세부 범위에 포함되고, ②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며, ③의 개발사업의 시행 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① 관계 법령별 개발 사업의 세부 범위	(가) 적용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
	(나)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	해당
②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발사업	(가) 높이 15m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
	(나) 높이 20m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
	(다) 길이 50m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라) 길이 2km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 하는 경우	해당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000㎡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 표고 300m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의 50/100 이상인 지역 - 「연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구역의 경계로 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해당 [신역천(지방), 풍산천(지방), 중수천(지방) 횡단]
③ 시행 면적이 30,000㎡ 이상인 개발사업		해당

자료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환경부예규 제726호(2023. 4. 10)

2.4 건강 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 검토

- 금회 사업은 안동시 관내 국도34호선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또는 에너지 개발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은 설치하지 않아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표 2 - 6]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1.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해당 없음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없음
2. 에너지개발	가. 「전원개발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해당 없음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시설 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설치사업	해당 없음
3.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분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2) 최종처분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3) 중간처분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	해당 없음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킬로리터 이상인 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해당 없음

자료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별표 1]

2.5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검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후변화변화 영향평가 대상계획 여부 검토 결과, 본 계획은 도로의 건설사업으로 협의회 개최가 비고에 해당하는 일자 이전이며, 연장 11.14km로 12km이상 도로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후 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표 2 - 7]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전략환경 영향평가 (개발 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건설공사는 제외한다]	해당없음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나목7)은 제외한다]	해당없음
	다. 에너지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	해당없음
	라. 항만의 건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5)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7)	해당없음
	마. 도로의 건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마목 1)과 2)는 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없음 (연장 11.14km이며 협의회 개최가 2023.09.23.이전)
	바.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하천의 길이가 20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없음
	사.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거목	해당없음

[표 계속]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개발사업

구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	
환경 영향 평가	가. 도시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없음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사업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제외한다)	해당없음
	다. 에너지 개발사업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라목1)(「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의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마목	해당없음
	라. 도로의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도로의 길이가 12km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해당없음 (연장 11.14km)
	마.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	해당없음
	바.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5호	해당없음

비고)

1. 제1호가목 및 라목, 제2호사목 및 마목,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은 2023년 9월 25일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의 규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2.6 중점평가 사업 대상 검토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0호, 2022. 12. 20)」 제8조 (중점평가사업)에 대하여 조사결과, 동법 제1항(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제2항(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따른 중점평가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계획노선이 위치하는 안동시 관내에는 자연공원(청량산 도립공원-27km 이격), 야생생물보호구역(서후면, 성곡동-7.3km 이상 이격), 상수원보호구역(안동, 상류방향 12.3km 이격), 수변구역(계획노선 상류방향-반변천 구간)이 위치하고 있으나, 계획노선과의 이격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2 - 8] 중점평가사업 대상 범위

구분	대상사업의 범위		
1. 전략 환경영향평가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없음 (계획노선 직접 저촉 없음)
	3. 재검토를 통보한 계획으로서 다시 협의를 요청하거나 부동의된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없음
	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인·허가 등이 이루어진 사업 또는 인·허가 등이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업(이하 “사전공사” 라 한다)으로서 공사중지 후 협의를 요청되는 경우		해당 없음
	5. 그 밖에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환경영향평가	1.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본다)		해당 없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는 경우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간척사업	해당 없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운하건설사업	해당 없음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조력 및 원자력 발전 건설 사업	해당 없음
		라.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사업	해당 없음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해당 없음
	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해당 없음	
3. 그 밖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8조(중점평가사업) 참고

제 3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금회 계획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 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2023. 4. 1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 1. 1, 환경부” 등을 참고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 평가대상지역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가 과정에서 평가대상지역 범위를 구체화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여 제시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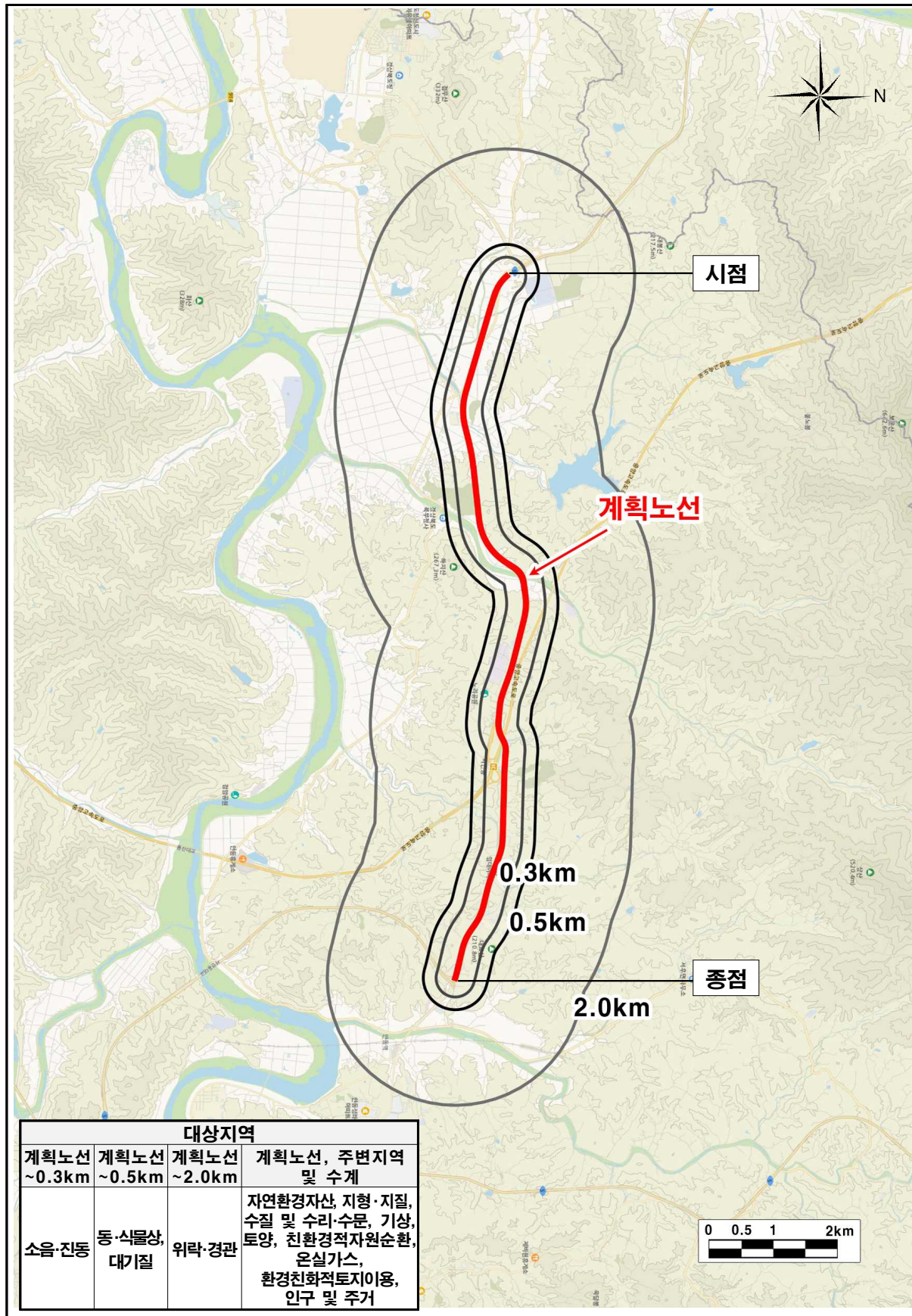
[표 3 - 1] 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 지역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공간적	시간적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상위 및 관련 계획, 주변 개발사업 연계성 검토 필요지역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계획 비교, 입지 비교 등이 필요한 지역	
2.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150~500m 이내 지역	공사시 운영시	○식생 훼손, 동물상 서식지 이동, 출현양상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분류군별 조사범위는 주) 참조)
		자연환경자산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계획노선 조성에 따라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2.0km 이내 지역	운영시	○계획노선 건설에 따른 위락시설 영향 예상 지역 및 교차로, 절성토사면, 교량 등에 따른 경관 변화 예상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 및 수리·수문	계획노선 및 주변 수계 (통과수계 상·하류 100m)	공사시 운영시	○공사시 토사유출,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수계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수계

[표 계속] 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대상 지역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공간적	시간적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인근 관측소)	공사시 운영시	○인근 기상관측소의 최근 10년 자료를 통해 대기질 등의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 기 질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0.5km 이내 지역	공사시 운영시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 ○운영시 도로 이용 차량으로 인한 오염물질 영향 예상지역
		토 양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등에 따른 토양오염 유발지역
		소음·진동	계획노선 좌·우 0.3km 이내 지역	공사시 운영시	○공사장비 가동 등으로 인하여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이용차량에 의한 도로소음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및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 환경 적 자 원 순 환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공사시 공사장비, 공사인부 등에 의한 각종 폐기물 발생지역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지역
		온 실 가 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공사장비 가동, 운영시 차량 운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 지 이 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인 구 및 주 거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도로 건설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 예상 지역

주)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의 자연생태환경조사 가이드라인」 참조(면사업 기준)
 - 현지조사 범위 : 500m 이내(포유류, 조류), 150m 이내(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하천 상·하류
 100m 범위(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
 - 광역조사 범위 : 계획노선을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그림 3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도

제 4 장 계획노선 구상안

4.1 계획노선 구상안

4.1.1 설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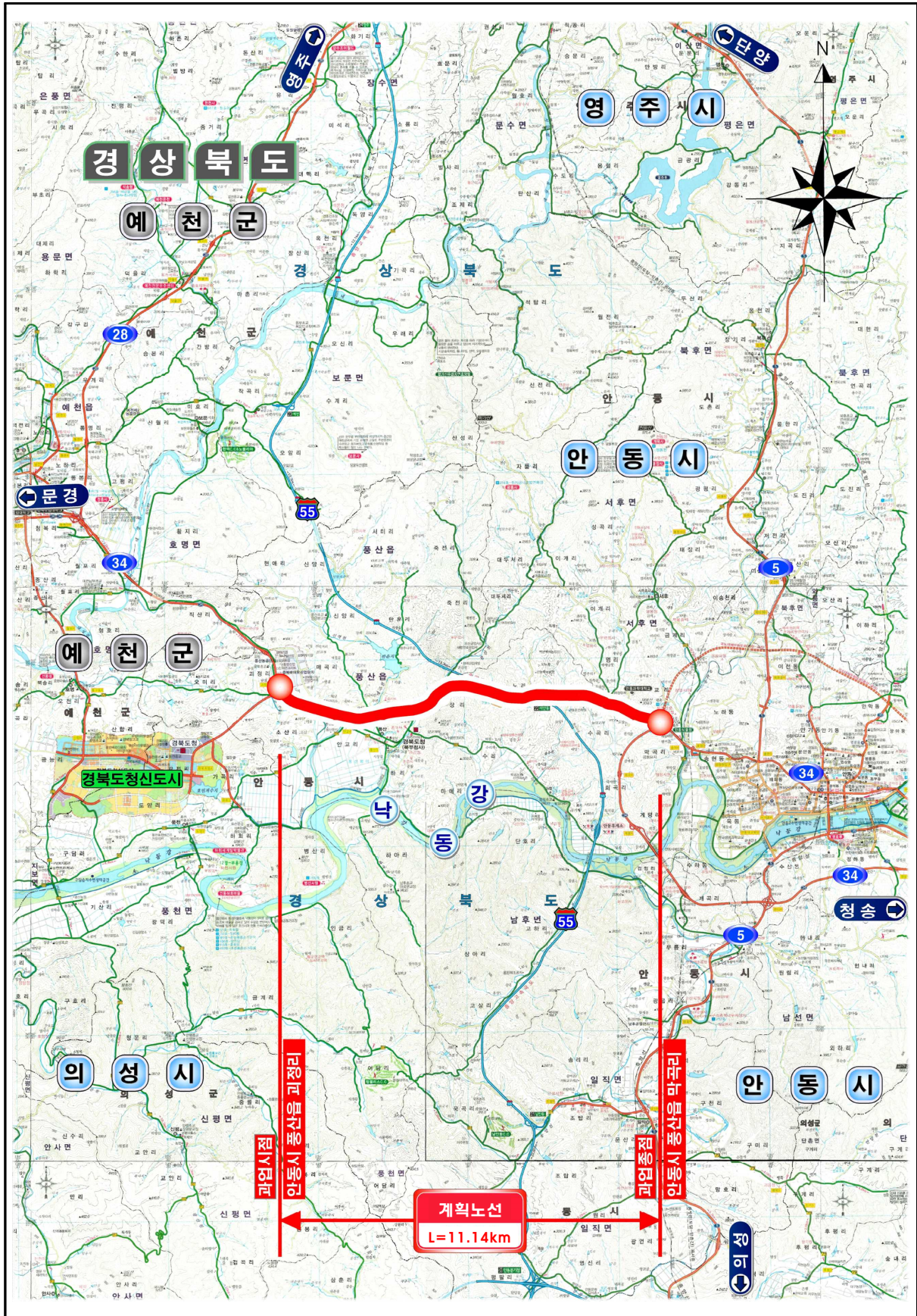
- 본 계획노선은 일반국도 등급 재분류 방안(2008)의 일반국도 노선별·구간별 등급 분류 현황에 따르면 국도(Ⅲ)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경상북도 신청사 이전 등 교통여건이 변화 되었으므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21)」,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2012)」에 의거하여 지방지역 주간선도로(국도Ⅱ등급)로 적용함

4.1.2 기하구조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21)」,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201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획함

[표 4 - 1] 기하구조

구 분	단 위	본 선	연 결 로	비 고
설 계 속 도	km/hr	80	50	
최소평면곡선반경	m	280	80	
완화구간의 최소길이	m	50	30	
최 소 곡 선 장	$\theta \geq 5^\circ$	m	90	60
	$\theta < 5^\circ$	m	$450/\theta$	$300/\theta$
중 단 경 사	평 지	%	4	7
	산 지	%	7	10
최 소 중 단 곡 선 변 화 비 율	불 록(凸)	m/%	40	10
	오 목(凹)	m/%	30	11
최 소 중 단 곡 선 장	m	70	40	
최 소 정 지 시 거	m	120	60	
표 준 횡 단 경 사	%	2	2	
최 대 편 경 사	%	6	8	
편경사접속설치비율	%	1/150	1/115	
설계기준자동차*주)	-	세미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최소 회전반경 12m



(그림 4 - 1) 계획노선 위치도

제 5 장 대안의 설정

5.1 대안 선정

- 대안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 1. 1, 환경부” 에 의거, 다음과 같이 6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안은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비교”, “수단과 방법”, “시기와 순서” 를 대안으로 선정하고 비교·분석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함

[표 5 - 1] 대안의 종류 및 채택

대안종류	대안 설정방법	채택	제외	사유
계획 비교	○ 해당 계획의 미수립(NO action)과 계획의 수립에 대한 비교	○		○ 사업시행, 미시행에 대한 대안 비교 후 기대효과 검토
입지 및 토지이용	○ 개발 대상 입지에 대한 대안	○		○ 기존 국도 구간별 확장 방법 비교
수단과 방법	○ 해당 계획이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	○ 기존도로 확장 계획으로 환경보전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노선 선정 후 검토
수요와 공급	○ 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요·공급량의 변경에 대한 대안		○	○ 교통량 분석 등 수요, 공급에 대한 검토는 노선 선정 후 검토가 가능
시기와 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의 변경에 대한 대안	○		○ 금회 계획수립시와 향후 계획수립 시 검토 시행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별표 3], [별표 4]

5.2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

- 금회 계획노선을 확장하는 목적 및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No action)를 포함한 계획 비교, 계획노선 대안 검토에 따른 입지 비교, 계획수립 시기에 따른 시기순서 비교의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함

[표 5 - 2]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

대안	시나리오		
계획 비교	1안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No Action)	
	2안	○ 행정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	
입지 비교	신천역 통과구간	1안	○ 매곡2교 양측 확장
		2안	○ 매곡2교 예천방향 신설(편측 확장)
	상리교 구간	1안	○ 예천방향 및 안동방향 상리교 확장
		2안	○ 예천방향 존치 및 안동방향 상리교 편측확장
	중앙고속도로 통과구간	1안	○ 서안동IC 연결로 비개착 1개소, 상리교 하부 확장
		2안	○ 서안동IC 연결로 비개착 2개소
시기 순서	1안	○ 급회 계획수립시	
	2안	○ 향후 계획수립시	

5.3 대안별 비교·분석

5.3.1 계획의 비교

- 계획 수립(Action)과 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비교 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계획 수립시 일부 지역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여건 변화 등이 예상되나, 기존 도로(국도 34호선) 교통 정체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 등이 예상됨
- 한편, 계획시행에 따른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할 경우 환경여건 변화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환경영향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5 - 3] 계획 비교에 따른 대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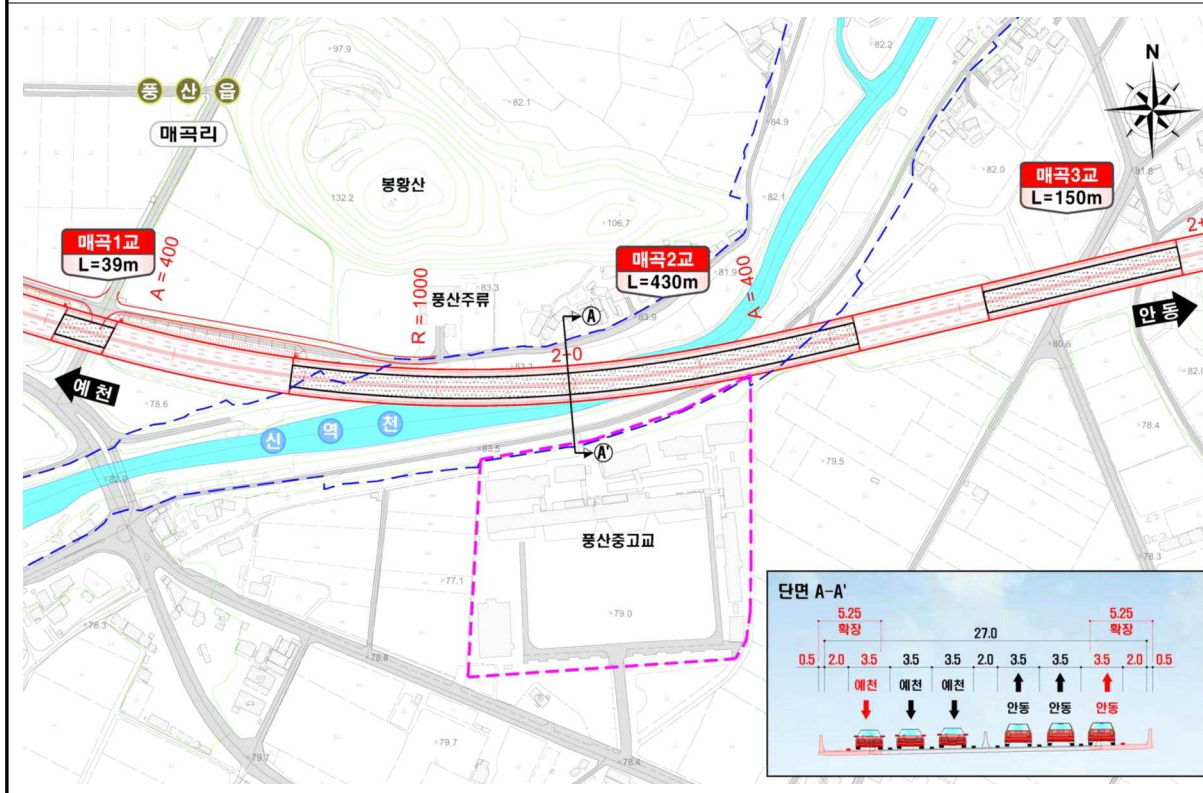
구분	비교 1안	비교 2안
대안 종류	계획 수립(Action)	계획 미수립(NO Action)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안동시 지역의 연계 교통 강화 ■ 국도 34호선의 교통량과 주변 개발 사업의 유발 교통량 분산 ■ 교통 정체 최소화 및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정성 확보 ■ 도로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 서비스 수준 향상 ■ 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국가발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계획 미수립에 따라 기존 자연 환경 변화가 발생되지 않음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 주변 지형, 경관 변화 발생 ■ 공사시 대기질, 소음·진동 등 영향 예상 ■ 도로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교통 소음, 비점오염물질 발생 등의 영향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등 주변 개발 진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 대처 불가 및 교통 정체 가중 ■ 지역 경쟁력 악화
선정안	○	
검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미수립시 환경기준 유지 등은 가능하나,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등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량 대처가 불가하여 국도34호선의 지속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됨 □ 계획노선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시 B/C 0.75으로 분석되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됨 □ 따라서, 주변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와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계획을 수립[1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됨 	

5.3.2 입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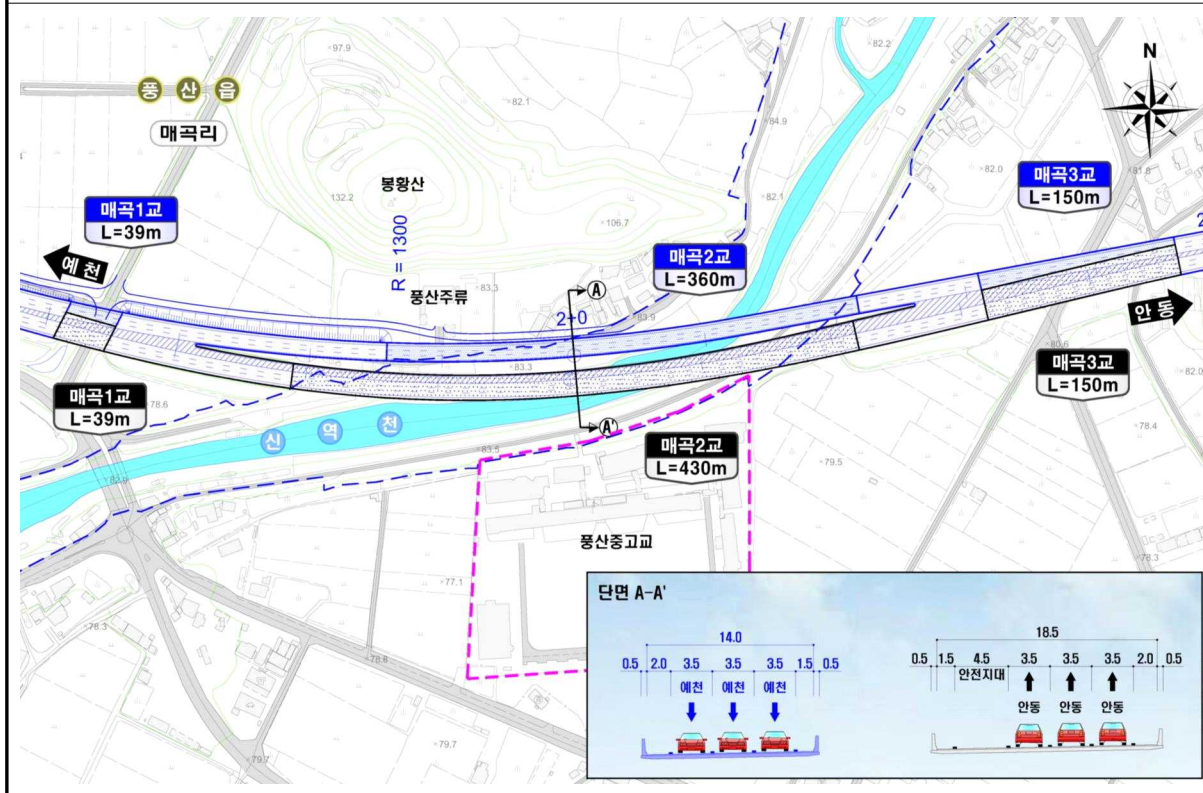
가. 신역역 통과구간(STA.1+500~2+500)

구 분		비교1안	비교2안
노선개요		• 매곡2교 양측 확장	• 매곡2교 예천방향 신설
현안사항		• 매곡2교 안동방향 풍산중고교 근접, 예천방향 풍산주류 등 민가 11가구 근접 • 신역천 하천구역내 교각 설치 과다 (π 형 교각 7개 설치)	
토 공	깎 기	-	-
	쌓 기	33.5만 ^m	39.7만 ^m
	순쌓기	-	-
	사 토	33.5만 ^m	39.7만 ^m
구조물	교 량	3개소 / 619m, 2차로 확장	3개소 / 549m, 3차로 신설
추 정 사업비	공사비	217.3억원	228.9억원(중 11.6억원)
	보상비	11.1억원	14.8억원(중 3.7억원)
	사업비	228.4억원	243.7억원(중 15.3억원)
특 징	기술적 측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공사 최소(양측 1차로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곡1교(L= 39m, RC라멘) 4 → 6차로 - 매곡2교(L=430m, 강box거더교) 4 → 6차로 - 매곡3교(L=150m, 강box거더교) 4 → 6차로 • 신역천 통과구간 평면선형 : R=1000m(A=400) • 신역천(지방하천) 예각 교차로 인한 교각 설치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구역내 π형 교각 7개소(14개 기둥) 설치 - 양측 1차로 확장시 교각 추가로 과다한 하천 점유로 관련기관협의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교량공사(예천방향)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곡1교(L= 39m, RC라멘) 3차로 신설 - 매곡2교(L=360m, 강box거더교) 3차로 신설 - 매곡3교(L=150m, 강box거더교) 1~3차로 편측확장 • 신역천 직선 통과로 교량연장 최소 • 신역천(지방하천) 최단 통과로 교각 설치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역천 하천구역 최단구간(L=90m) 통과 - 하천구역 점유 최소화하여 관련기관 협의 유리
	사 회 환경적 측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산주류 및 봉황산 앞 민가 저축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천방향 1차로 확장시 약 15m 근접 - 마을진입로 봉황길 이설 연장 최소 • 안동방향 1차로 확장시 풍산중고교 학교부지 저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부지 저축 불가피하여 민원 발생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산주류 및 봉황산 앞 민가 4가구 저축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산주류 부지 일부 및 민가 4가구 저축 - 마을진입로 봉황길 이설 약 400m • 안동방향 1차로 확장시 풍산중고교 학교부지 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부지를 존치하여 민원 발생 우려 해소
	경제적 측 면	• 교량공사 최적화로 공사비 보통	• 교량공사 및 토공사 증가로 공사비 고가
	환경적 측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내 교량 설치에 따른 영향 발생 • 마을진입로 이설연장 최소화로 환경영향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내 교량 설치에 따른 영향 발생 • 마을 진입로 이설(L=400m)에 따른 환경영향 발생
검토의견		• 비교2안(예천방향 3차로 신설)이 풍산중고교 학교부지를 저축하지 않고 하천구역 점유를 최소화하나, 풍산주류 및 봉황산 앞 민가 저축을 배제하고 마을 진입로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비교1안(양측 단순확장)을 최적안으로 선정함	

비교1안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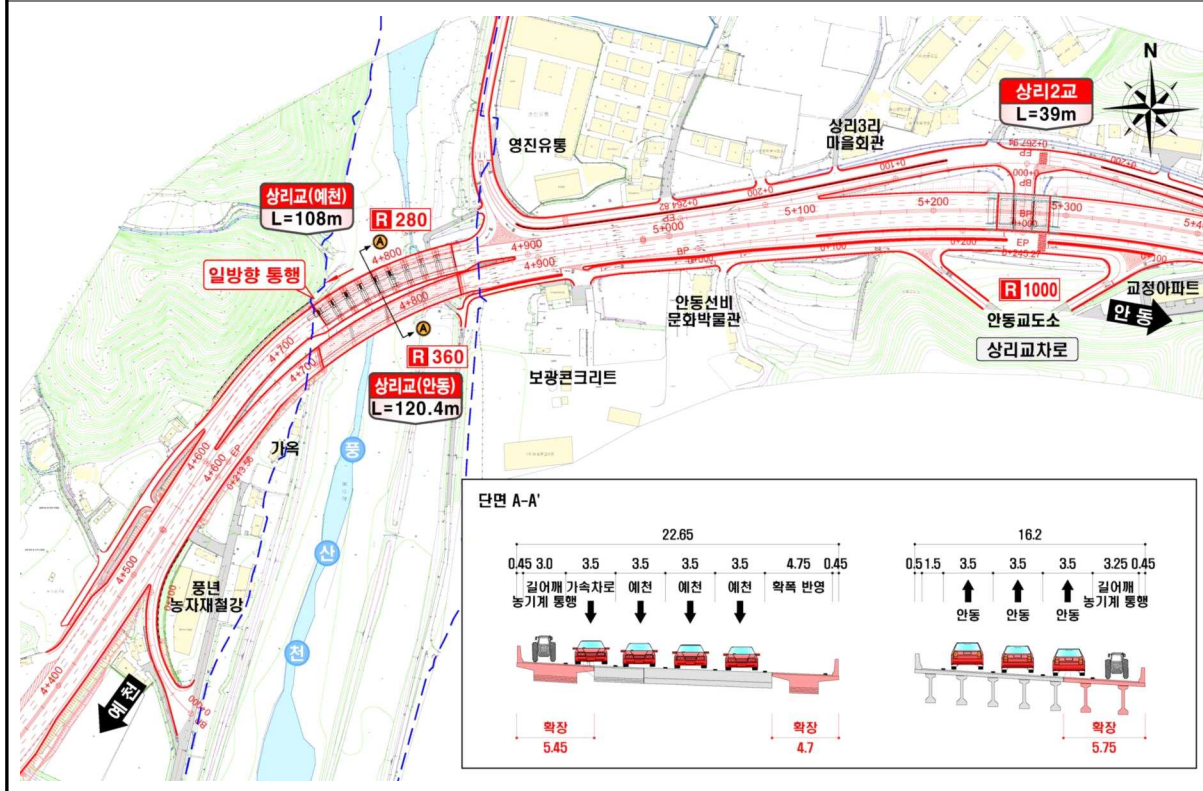
비교2안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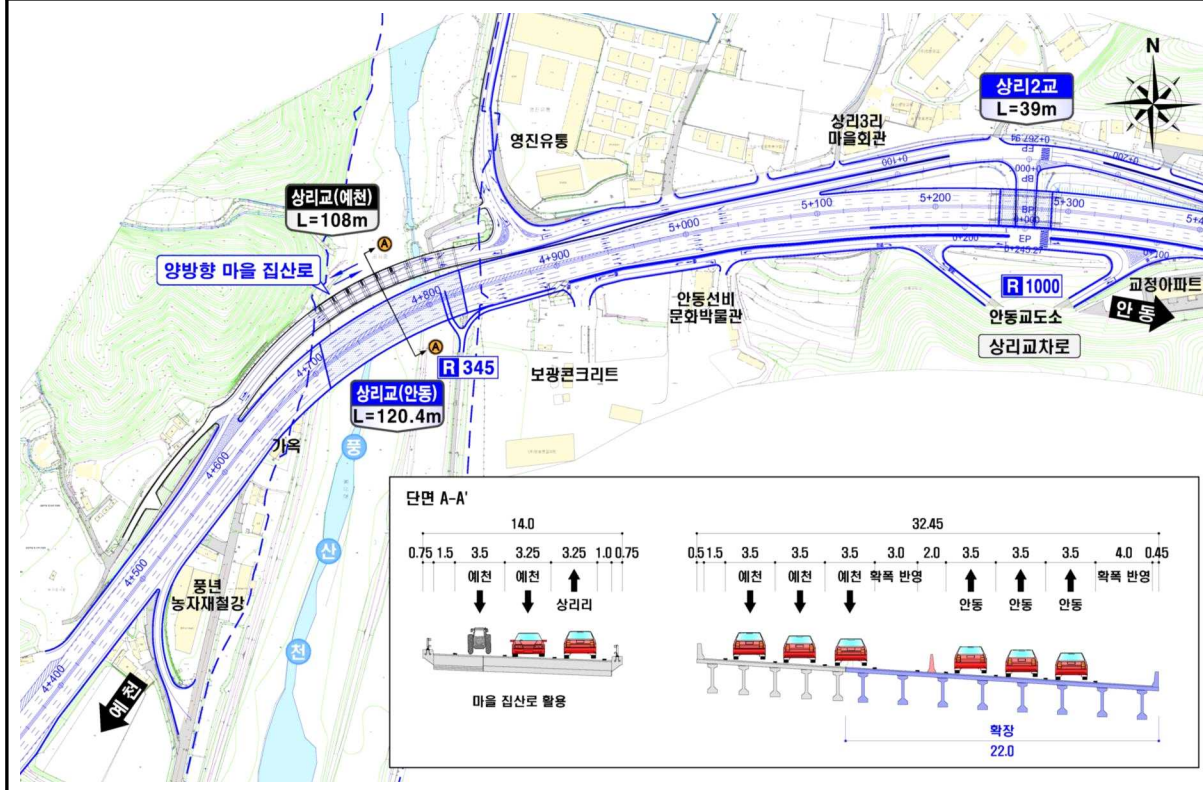
나. 상리교 구간 (STA.4+400 ~ STA.5+100)

구 분		비교1안	비교2안
노선개요		• 예천방향 및 안동방향 상리교 확장	• 예천방향 존치 및 안동방향 상리교 편측 확장
현안사항		• 상리교(예천방향)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사업 공사중(3차로 확장) • 상리리 마을 진출입로 본선 직접연결(예천방향) 및 보광콘크리트 진출입로 본선 직접연결(안동방향)	
토 공	깎 기	1.4만㎡	0.4만㎡
	쌓 기	1.0만㎡	1.6만㎡
	순쌓기	-	1.2만㎡
	사 토	0.4만㎡	-
구조물	교 량	2개소 / 228m, 1차로 확장	1개소 / 120m, 3차로 확장
추 정 사업비	공사비	122.8억원	123.5억원(증 0.7억원)
	보상비	5.2억원	22.0억원(증 16.8억원)
	사업비	128.0억원	145.5억원(증 17.5억원)
특 징	기술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단순화 및 단계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리교 양측 1차로 단순확장(교통전환 불필요) • 길어깨 폭원을 확장하여 부체도로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및 농기계의 안전한 통행 확보 - 상리리 마을간 일방향 통행으로 지속적인 주민민원 예상 • 국도34호선에서 상리리 마을로 진출입로 설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교차로 설치 불가(교차로간 최소 간격, 신호 인지를 위한 최소시거 미확보, 도로용량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처리계획 단순화 및 단계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 6차로 완료 후 교통전환 가능 • 상리교(예천방향)는 본선과 분리, 집산도로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시설 교통접근성 및 교통안전성 개선 - 상리리 마을간 안전한 양방향 이동으로 주민민원 해소 • 국도34호선에서 상리리 마을로 진출입로 설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교차로 설치 불가(교차로간 최소 간격, 신호 인지를 위한 최소시거 미확보, 도로용량 저하)
	사회 환경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 운전습관 불변으로 통행불편민원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량의 양측 단순 확장으로 통행의 혼란 없음 • 상리리 마을 및 영진유통 본선 직접 진출입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위험구간으로 개선요구민원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산천 횡단하는 마을 집산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 진출입 차량 동선 분리로 교통 안전성 개선 • 지장물 저축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년농자재철강, 가옥, 보광콘크리트 사무동 저축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공사 및 지장물 저축 최소로 공사비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공사 및 지장물 저축 증가로 공사비 고가
	환경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공사 최소화로 하천에 미치는 영향 저감 • 지장물 최소화로 민원측면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물 편입으로 인한 민원측면 불리
검토의견		<p>• 비교2안(예천방향 존치 및 안동방향 상리교 편측 확장)이 본선과 분리된 마을 집산로 계획으로 상리리 마을간 안전한 양방향 이동 가능,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으로 교통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나, 길어깨 폭원 확장으로 보행자 및 농기계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고 지장물 저축을 최소화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비교1안(예천방향 및 안동방향 상리교 확장)이 최적안으로 선정됨</p>	

비교1안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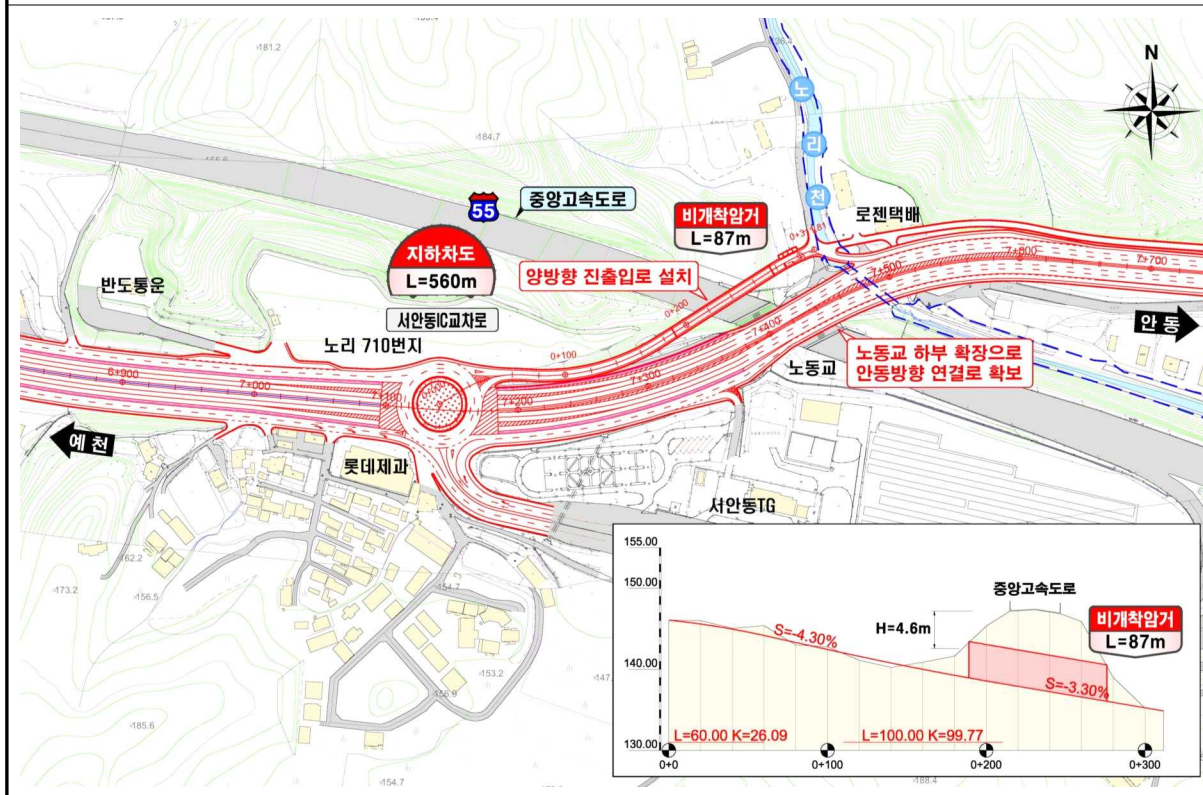
비교2안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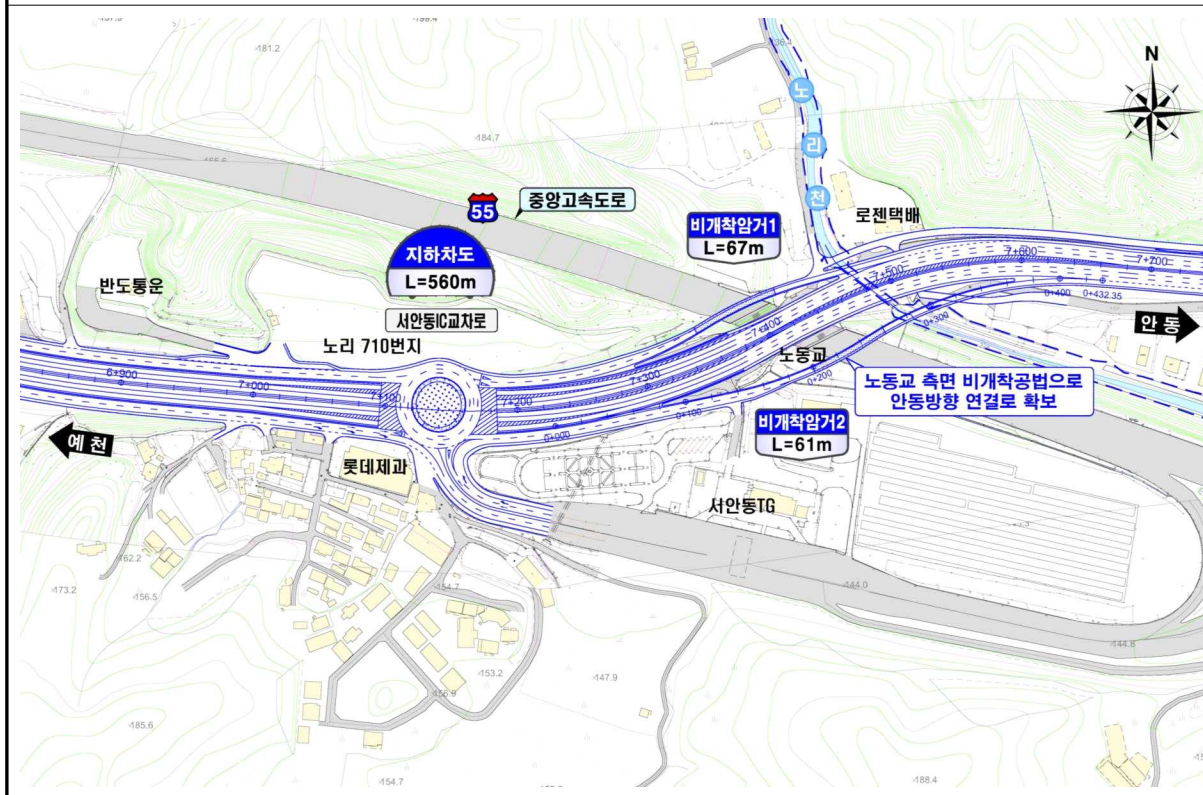
다. 중앙고속도로 통과 구간 (STA.7+000~STA.7+700)

구 분		비교1안	비교2안
노선개요		•서안동IC 연결로 비개착 1개소, 상리교 하부 확장	•서안동IC 연결로 비개착 2개소
현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차도(4차로 BOX) 양측 단순 확장 불가 → 양측 1차로 신설 BOX 설치 (예비타당성 검토) •중앙고속도로 하부통과시 비개착 구조물 계획 → 노동교 하부 확장폭원 미확보 (예비타당성 검토) •지하차도 상부 회전교차로 설치(경상북도 우선 추진사업) 	
토 공	깎 기	3.0만㎡	2.8만㎡
	쌓 기	2.0만㎡	2.4만㎡
	순쌓기	-	-
	사 토	1.0만㎡	0.4만㎡
구조물	비개착	1개소 / 87m	2개소 / 128m
	지 하 차 도	1개소 / 560m	1개소 / 560m
추 정 사업비	공사비	350.0억원	384.2억원(증 34.2억원)
	보상비	11.6억원	12.2억원(증 0.6억원)
	사업비	361.6억원	396.4억원(증 34.8억원)
특 징	기술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교 하부 본선을 자립식옹벽 설치로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방향 연결로 노동교 하부로 통과 •도로공사 검토의견으로 추후 협의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천방향 연결로 비개착통로암거, 안동방향 연결로를 본선과 합류후 노동교 하부로 통과 •지하차도 신설공사에 따른 교통처리 복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중 교통처리 단계 증가로 교통안전성 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교 하부 본선 미확장, 비개착통로암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방향 연결로를 비개착통로암거로 통과 •도로공사와 추후 협의 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천방향 및 안동방향 연결로 비개착통로암거 2개소로 도로공사와 협의 어려움 •지하차도 신설공사에 따른 교통처리 복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중 교통처리 단계 증가로 교통안전성 불리
	사회 환경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천방향 연결로 비개착통로암거 구간 양방향으로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안동IC교차로와 노리 마을간 양방향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주민민원 해소 •예천방향 서안동IC 진출차로 운전자 혼란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진출입로를 통한 서안동IC교차로에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천방향 연결로 비개착통로암거 구간 일방향 연결로 기능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안동IC교차로와 노리 마을간 진출입로 부재로 지속적인 민원 예상 •운전자 운전습관 불변으로 통행불편민원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천방향 연결로를 통한 서안동IC교차로에 진입
	경제적 측면	•비개착통로암거 최소화로 공사비 보통	•비개착통로암거 증가로 공사비 고가
	환경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로 최소화로 인한 노리천 수질 영향 측면 유리 •노리마을 민원해소 측면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동방향 연결로 추가설치에 따른 노리천 수질 영향측면 불리 •노리마을 민원해소 측면 불리
검토의견		<p>•비교2안(본선 6차로, 비개착 2개소)이 본선 운전자 통행측면에서는 유리하나, 도로공사 검토의견을 반영한 계획으로 추후 협의시 유리하고, 양방향 진출입로 설치로 주민민원을 해소하며, 비개착통로암거를 최소화하여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비교1안(본선 7차로, 비개착 1개소)이 최적안으로 선정됨</p>	

비교1안 평면도



비교2안 평면도



5.3.3 시기와 순서 비교

- 금회 계획 수립시와 향후 계획 수립시를 비교 검토함
- 검토결과 장래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교통용량 확보 및 지역경제발전,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므로 금회 계획을 수립하는 비교1안을 최적으로 선정함

[표 5 - 5] 시기와 순서 비교

구 분	비교 1안	비교 2안
시 기	금회 계획 수립시	향후 계획 수립시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안동시 지역의 연계 교통 강화 •국도 34호선의 교통량과 주변 개발 사업의 유발 교통량 분산 •교통 정체 최소화 및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정성 확보 •도로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 서비스 수준 향상 •거리 및 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국가발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계획 수립시까지 소음·진동, 지형·지질 및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등의 환경훼손 최소화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수립에 따른 소음·진동, 지형·지질 및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등의 불가피한 환경훼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통행량 증가 대처 미흡 •지역 균형발전 저해 및 교통 체증에 따른 민원 증가
선 정	○	-
<p>•장래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한 교통용량 확보 및 지역경제발전,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므로 금회 계획을 수립하는 비교1안을 최적으로 선정</p>		

제 6 장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6.1 평가 항목 설정

- 환경영향요소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을 선정함
- 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토양 및 친환경적자원순환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함

[표 6 - 1] 평가항목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 정 사 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	현황조사	제외항목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분석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계획비교, 입지 등의 대안을 비교 검토	
2.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 계획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서식환경 변화	
		자연환경자		○	■ 산림지역 및 주변 하천의 주요 자연환경 자산 현황 조사(환경영향평가 항목 적용)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 질성도에 따른 지형 변화 발생 ■ 토사유출 및 비탈면 발생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		■ 계획노선 확장 및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개량에 따른 경관 변화	
수환경의 보전	수질 및 수리·수문 · 해양환경		○		■ 공사시 및 운영시 수계 오염물질 발생 ■ 오수 및 폐수 발생 등 검토	
				○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 대기질 영향예측 수행시 기초 자료 사용	
		대 기 질	○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악 취			○	■ 계획노선 운영시 악취 발생원 없음
		토 양	○		■ 토지 편입에 따른 토양오염원 검토 ■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검토	
		소음·진동	○		■ 공사시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 운영시 이동 차량에 따른 소음 발생	
		위 생 · 공 중 보 건			○	■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없음
		전 파 장 해			○	■ 전파 장해 요소 없음
	일 조 장 해			○	■ 일조 장해 요소 없음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및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 환경 적 자원 순 환		○		■ 공사시 건설폐기물, 폐유, 임목폐기물 발생 ■ 기존도로 철거,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발생	
		온 실 가 스		○	■ 장비 운용 및 교통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환경영향평가 항목 적용)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 지 이 용		○		■ 계획노선 건설공사 전, 후 토지이용 변화	
		인 구, 주 거		○	■ 도로 확장시 인구 및 주거 변화 검토	
		산 업		○	■ 계획시행시 산업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미	

6.2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23-72호」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 1. 1, 환경부” 를 참고함

[표 6 - 2] “계획의 적정성 분야”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	조사방법
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설정	□ 평가 대상지역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에 따른 현황조사 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기간	□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문헌조사
	사유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영향범위 내 조사	□ 계획노선 주변 개발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행정단계와 실시설계 단계까지 조사	□ 환경부 및 기타 행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 및 기초자료 확보
2)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설정	□ 평가 대상지역	□ 대안별 평가지표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기간	□ 문헌조사 및 설계시 전문가 자문
	사유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영향범위 내 조사	□ 대안별 설정된 평가 지표 현황 조사 후 환경영향 예측	□ 행정단계와 실시설계 단계까지 조사	□ 설계 수립시 단계별 자문을 통한 최적의 계획노선 선정

[표 6 - 3] “입지의 타당성 분야”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1/4)

구 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	조사방법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 환경영향평가지 항목 선정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설정	□ 평가 대상지역 (주요 수계 포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 [별표 6]에 따른 현황조사 항목 □ 식물상, 식생,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육수생물상(수생식물, 부착조류,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기간 □ 현지조사 : 총 4회	□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문헌조사 □ 현지 및 탐문조사
	사유	□ 육상 동·식물상 및 육수생태계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변화되는 주요 항목 선정	□ 행정단계와 실시설계 단계까지 조사	□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문헌조사, 현지조사, 탐문조사 비교 분석

[표 계속] “입지의 타당성 분야”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2/4)

구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	조사방법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환경영향평가기항목 선정 : 지형·지질			
	설정 □ 평가 대상지역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 [별표 6]에 따른 현황조사 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기간	□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문헌조사 □ 지반조사
3)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 환경영향평가기항목 선정 : 위락·경관			
	설정 □ 평가 대상지역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 [별표 6]에 따른 현황조사 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기간	□ 통계연보 및 기타 국가 데이터베이스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병행
4) 수환경의 보전	※ 환경영향평가기항목 선정 : 수질 및 수리·수문			
	설정 □ 평가 대상지역 수계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 [별표 6]에 따른 현황조사 항목 □ 현지조사 - 지표수질 : pH, BOD, COD, DO, SS, T-N, T-P,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유기인, 납, 6가크롬, ABS, PCB, 대장균군수,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TOC(총 21개 항목) - 지하수질(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 기준) : pH, 시안, 페놀류, 비소, 수은, TCE, PCE, 카드뮴, 납, 크롬,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총대장균군,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총 20개 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기간 □ 현지조사 : 총 4회	□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문헌조사 □ 현지조사 - 현장조사 및 측정망 조사 -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준수
	사유 □ 토사유출 및 노선이 횡단하는 수계	□ 공사시 및 운영시 수질 변화가 발생하는 현황 선정	□ 행정단계와 실시설계 단계까지 조사	□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문헌조사, 현지조사 비교 분석

[표 계속] “입지의 타당성 분야”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3/4)

구 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	조사방법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영향평가지 항목 선정 : 기상, 대기질				
	설정	□ 평가 대상지역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 [별표 6]에 따른 현황조사 항목 □ 현지조사 - PM-2.5 PM-10,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총 8개 항목, 3일 연속 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기간 □ 현지조사 : 총 4회	□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문헌조사 □ 현지조사 - 측정망 조사 -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적용
	사유	□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구간 중 정온이 요구되거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변화가 발생되는 현황 선정	□ 행정단계와 실시설계 단계까지 조사	□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측정망 조사결과, 현지조사 결과 비교 분석
	※ 환경영향평가지 항목 선정 : 토양				
	설정	□ 평가 대상지역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 [별표 6]에 따른 현황조사 항목 □ 현지조사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PCB, 시안, 페놀, BTEX,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총 19개 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기간 □ 현지조사 : 총 4회	□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문헌조사 □ 현지조사 - 측정망 조사 - 토양오염 공정시험 기준 준수
	사유	□ 노선 신설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토양 변화가 예상되는 현황 선정	□ 행정단계와 실시설계 단계까지 조사	□ 문헌조사 및 측정망 조사 결과, 현지조사 결과 비교 분석
※ 환경영향평가지 항목 선정 : 소음·진동					
설정	□ 평가 대상지역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 [별표 6]에 따른 현황조사 항목 □ 현지조사 - 주·야간 소음도 (주간 4회, 야간 2회) - 주·야간 진동레벨 (주간 2회, 야간 1회)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기간 □ 현지조사 : 총 4회	□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문헌조사 □ 현지조사 - 측정망 조사 -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준수	
사유	□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구간 중 정온이 요구되거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현황 선정	□ 행정단계와 실시설계 단계까지 조사	□ 문헌조사 및 측정망 조사 결과, 현지조사 결과 비교 분석	

[표 계속] “입지의 타당성 분야”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4/4)

구분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시간적 범위	조사방법	
2)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및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환경영향평가기 항목 선정 : 친환경적 자원순환				
	설정	□ 평가 대상지역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 [별표 6]에 따른 현황조사 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기간	□ 통계연보 및 기타 국가 데이터베이스 자료 조사, 문헌조사
	사유	□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지역(안동시) 또는 연계처리 지역	□ 공사시 및 기타 발생 폐기물 현황 조사	□ 행정단계와 실시설계 단계까지 조사	□ 환경부 및 기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 및 기초자료 확보
	※ 환경영향평가기 항목 선정 : 온실가스				
설정	□ 평가 대상지역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 [별표 6]에 따른 현황조사 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기간	□ 통계연보 및 기타 국가 데이터베이스 자료 조사, 문헌조사	
사유	□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구간 중 기후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에너지 사용 및 이용 현황 조사	□ 행정단계와 실시설계 단계까지 조사	□ 환경부 및 기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 및 기초자료 확보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환경영향평가기 항목 선정 : 토지이용				
	설정	□ 평가 대상지역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 [별표 6]에 따른 현황조사 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기간	□ 통계연보 및 기타 국가 데이터베이스 자료 조사, 문헌조사
	사유	□ 계획노선이 신설되는 안동시 지역	□ 안동시 토지이용 현황 및 토지 편입에 따른 토지 변화 조사	□ 행정단계와 실시설계 단계까지 조사	□ 환경부 및 기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 및 기초자료 확보
	※ 환경영향평가기 항목 선정 : 인구 및 주거				
설정	□ 평가 대상지역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 [별표 6]에 따른 현황조사 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기간	□ 통계연보 및 기타 국가 데이터베이스 자료 조사, 문헌조사	
사유	□ 계획노선이 신설되는 안동시 지역	□ 안동시 인구 및 주거 규모, 이동 등 조사	□ 행정단계와 실시설계 단계까지 조사	□ 환경부 및 기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 및 기초자료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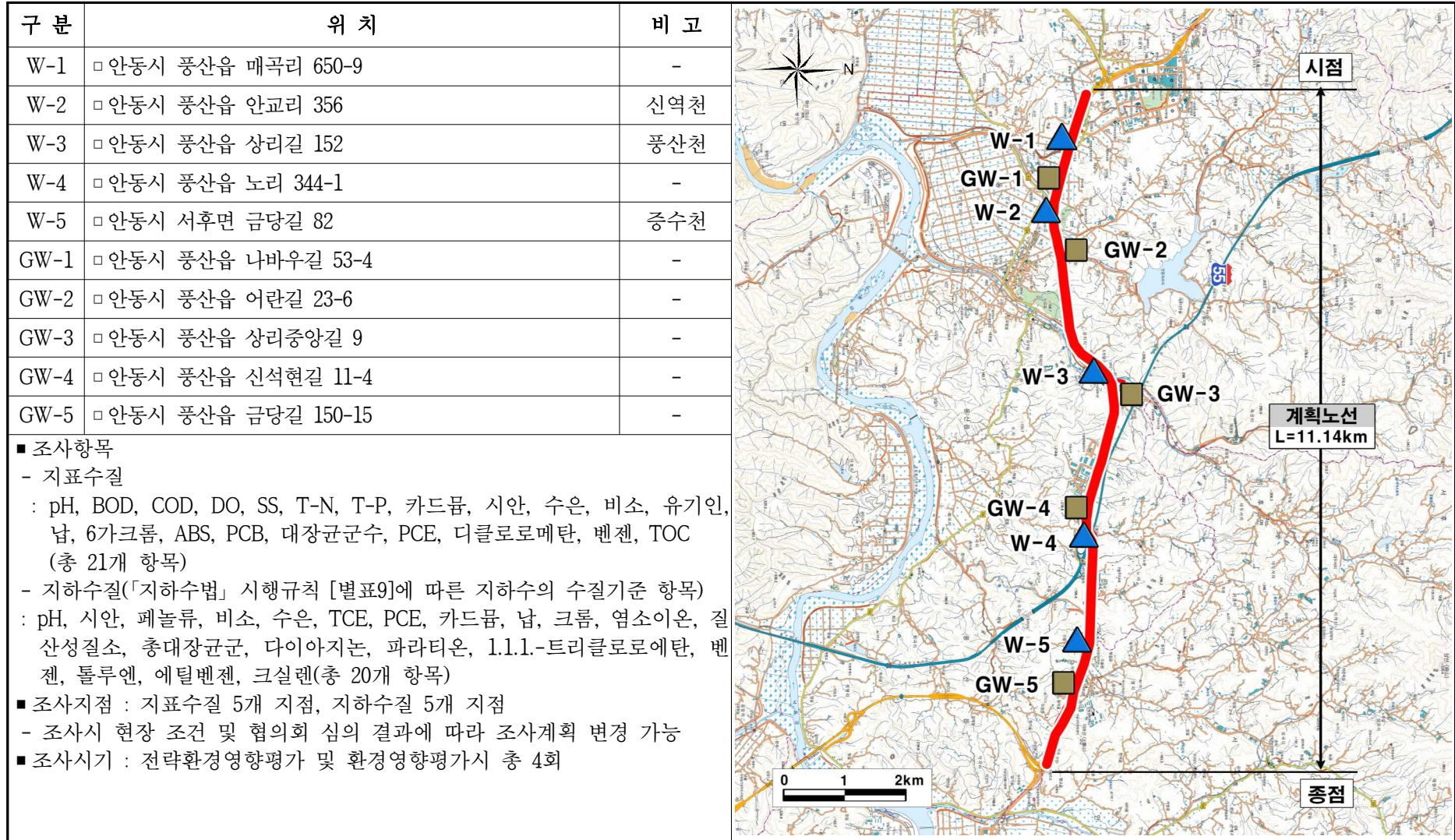
주) “토지이용” 항목은 환경영향평가기 생활환경 분야에서 검토할 계획임

[표 6 - 4] 대기질 현지조사 계획

구분	위치	비고
A-1	□안동시 풍산읍 새역마길 28-3(안교3리경로당)	-
A-2	□안동시 풍산읍 어란길 23	민가
A-3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141	민가
A-4	□안동시 풍산읍 신석현1길 3(관광농원지란지교)	-
A-5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안동국민체육센터)	-
A-6	□안동시 서후면 교리운곡길 57-11	민가

■ 조사항목 : PM-2.5 PM-10, SO₂, NO₂, CO, O₃, Pb, 벤젠
 (총 8개 항목, 3일 연속 조사)
 ■ : 총 6개 지점
 - 측정시 현장 조건 및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사계획 변경 가능
 ■ 조사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지 총 4회

[표 6 - 5] 지표수질 및 지하수질 현지조사 계획



[표 6 - 6] 토양 현지조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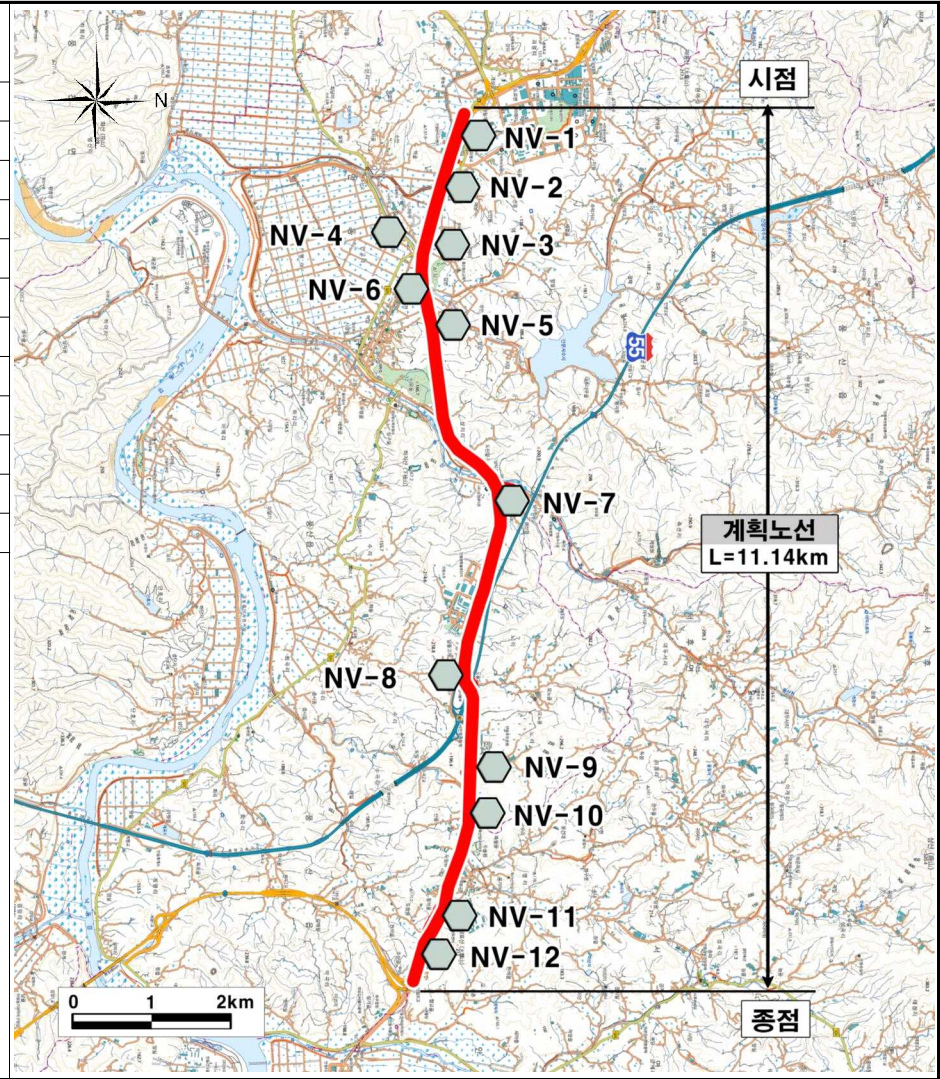
구 분	위 치	비 고
S-1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1	-
S-2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551	-
S-3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269	주유소
S-4	□안동시 풍산읍 노리 산 90-3	-
S-5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산 14-11	-

■ 조사항목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PCB, 시안, 페놀, BTEX, TPH,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총 19개 항목)
 ■ 조사지점 : 총 5개 지점
 - 조사시 현장 조건 및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사계획 변경 가능
 ■ 조사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지 총 4회

[표 6 - 7] 소음진동 현지조사 계획

구분	위치	비고
NV-1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64	-
NV-2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615-4	민가
NV-3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112-4	민가
NV-4	□안동시 풍산읍 새역마길 28-3(안교3리경로당)	-
NV-5	□안동시 풍산읍 어란길 23	민가
NV-6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320	학교
NV-7	□안동시 풍산읍 죽전길 36-4	민가
NV-8	□안동시 풍산읍 신석현1길 3(관광농원지란지교)	-
NV-9	□안동시 풍산읍 석교길 6	민가
NV-10	□안동시 풍산읍 서선길 51	학교
NV-11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안동국민체육센터)	-
NV-12	□안동시 서후면 교리운곡길 57-11	민가

- 조사항목 : 주·야간 소음도 및 주·야간 진동레벨
- 조사지점 : 총 12개 지점
 - 측정시 현장 조건 및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사계획 변경 가능
- 조사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지 총 4회



6.3 평가 범위 및 방법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한 항목별 평가 범위 및 방법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3. 1. 1, 환경부” 를 참고함.

[표 6 - 9]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방법 설정(1/3)

구분		환경평가 지표	평가방법 설정	평가방법 설정 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준 유지 달성 가능성 - 권역별 목표수질과의 적합성 - 물 수요관리 목표와 적합성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목표 등과의 적합성 □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의 목표 및 내용과 정합성 - 상위계획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구상과의 부합성 □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기본계획 공간구조와 연계성 - 도시·군기본계획의 생활권 설정과 연계성 - 도시·군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성 - 도시·군기본계획의 공원녹지 체계와 연계성 등 	체크리스트 분석 및 국가데이터 베이스 검토	□ 상위 및 관련계획을 리스트화하여 해당 계획 반영여부를 분석하고 적정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보호용도지역 보전 -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축 보전 -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가능성 - 생태복원 - 생태통로 계획의 적정성 □ 쾌적한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녹지계획의 적정성 - 오염원과 배려시설 배치계획의 적정성 	다양한 대안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시행	□ 대안 노선별로 환경평가 지표를 분석하여 최적의 계획노선을 선정하고, 단계별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설계 적정성, 안정성, 환경 보전 여부 등을 평가함.
2.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생물종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 보전계획 수립 - 동물상 로드킬 방지 - 동물이동로 확보 및 단절구간 연결로 확보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한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법정 보호종 및 보전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서식처 확인 후 영향예측 실시 □ 또한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 및 서식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검토 시행
	자연환경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처 보전 및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과 특성, 중요성(가치) 등을 고려한 대책 	현지 및 문헌조사 후 보호지역 분석	□ 현지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습지, 공원 등 주요 보호지역 현황 파악 후 보전 대상지역의 영향 및 불가피한 영향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

[표 계속]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방법 설정(2/3)

구분		환경평가 지표	평가방법 설정	평가방법 설정 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자연환경의 보전	지형 및 생태축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지형 현황 파악 □ 지형변화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량 계획 - 비육토 유실방지, 활용방안 수립 □ 생태축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성토 범위 및 적정 계획고 검토 - 비탈면 처리 및 안정대책 수립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지반조사 후 계획노선 설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적, 문화적, 지형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등을 조사하여 계획노선 조성시 지형적인 여건과의 조화, 지형변화의 최소화, 녹지축 보전,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 계획을 수립 □ 또한,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통하여 발생하는 비탈면 보전, 보호, 복원 계획을 수립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변화로 인한 영향의 예측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현지조사 후 주요 조망점 분석 후 경관변화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조망점 선정 후 사업시행 전, 후 변화를 비교하여 계획 시행으로 인한 기존 자연경관과의 영향 검토 실시 □ 또한, 주요 조망점에서 자연경관이 계획으로 인한 질적 저하 및 훼손의 가능성을 파악
	수질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현황 □ 수환경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사유출에 따라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대책 수립 - 공사시 오수 적정 처리 대책 수립 - 운영시 초기우수 처리계획 수립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후 계획노선 설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후 계획노선 설계를 분석하여 목표수질 영향 검토 시행
생활환경의 안전성	기상 및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준의 유지 □ 대기질 계획목표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장비가동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예측 및 대책 수립 - 운영시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예측 및 대책 수립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후 계획노선 설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및 문헌조사 후 계획노선 설계를 분석하여,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예측하고 적정 저감대책 수립
	환경기준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준의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오염 현황 파악 - 공사시 토양 오염원 유출 검토 - 토양오염 확인시 대책 수립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후 계획노선 설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및 문헌조사를 활용하여 정성적 예측 후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 확인 □ 또한, 공사시 장비투입 및 토양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역의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 오염여부 확인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준의 유지 □ 소음·진동 계획목표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영향예측 및 대책 수립 - 운영시 방음벽 등의 차음대책 수립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후 계획노선 설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및 문헌조사 후 계획노선 설계를 분석하여,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운영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발생을 예측하고 적정 저감대책 수립

[표 계속]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방법 설정(3/3)

구분		환경영향평가	환경평가 지표	평가방법 설정	평가방법 설정 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생활환경의 안전성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및 자원 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폐기물의 성상별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매립, 소각, 재활용 방안) 	문헌조사 후 계획노선 설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 및 국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조사하여 폐기물 등의 발생과 처리시설 현황 및 연계처리 적정성을 평가함 또한, 공사 계획을 분석하여 단계별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유 및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함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실가스 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환경부하가 적은 공법·장비·자재 사용 및 재활용계획 수립 	문헌조사 후 계획노선 설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노선 설계를 분석하여 공사 장비 가동 및 차량운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예측(배출계수 및 배출원단위 적용)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친화적 공간계획 수립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 수립 	대안 검토후 계획노선 설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대안 노선을 분석하여 생활환경 안정성 확보 및 환경 보전 대책을 반영한 계획노선 수립 또한, 보전·보호지역과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 환경피해 유발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노선 선정
		인구,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주거 변화 검토 공사시 투입인력 변화 검토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대책 	문헌조사 후 계획노선 설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조사를 통하여 관련 계획에 따른 유입인구 및 주택 영향 파악

주) “토지이용” 항목은 환경영향평가지 생활환경 분야에서 검토할 계획임

제 7 장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7.1 전략환경영향평가 약식 절차 대상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별표 2의2]에 의거하여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해당여부를 검토함
- 계획노선은 총 연장 11.14km로 구체적인 계획의 입지 등이 결정되어 있으며,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급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약식절차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시행하지 않음**

[표 7 - 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해당여부
1.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계획의 입지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됨
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2-1. 정책계획	
1) 「연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해당사항 없음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 해당사항 없음
4) 「지하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해당사항 없음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개발기본계획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해당사항 없음

7.2 환경영향평가 약식 절차 대상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에 의거하여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여부를 검토함
- 계획노선 총 연장은 11.14km로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확장 10km)의 약 1.11배에 해당하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인접하여 위치하므로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표 7 - 2] “약식절차”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약식절차 대상사업	해당여부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 해당 : 최소 규모의 약 1.14배 $\frac{11.14\text{km(계획규모)}}{10\text{km(기준)}} = 1.14$
2. 사업지역에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 계획노선 STA.2+820에서 약 23m 이격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위치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 주변관리지역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해당사항 없음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안동시 관내 수변구역 위치하나 계획노선 상류방향 반변천 구간임)
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자.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 해당사항 없음
차.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해당사항 없음

제 8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8.1 평가 항목, 범위 등의 주민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⑤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내용을 공개함
- 평가항목·범위 결정내용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⑤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①항
 - 공개 시작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 공개 완료 : 공개 시작일로부터 14일 이상 게시
 - 공개 방법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②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공개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및 협의회 심의의견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⑥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 ※ 금회 협의회 심의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할 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결정·공개할 계획이었으나, 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절차(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함

8.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8.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기관 검토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제②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②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검토기간 :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구 분		기 관	비 고
1. 환경부장관(협의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준
2. 승인기관의 장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①유역, 지방 환경청장	(협의기관 중복)	
	②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장	주 관 ■ 안동시	
		관 계 (해당사항 없음)	
③평가 대상지역 관할 도지사	■ 경상북도		
4.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①자연환경보전지역	(해당사항 없음)	
	②자연공원	(해당사항 없음)	
	③습지보호지역 및 관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④특별대책지역	(해당사항 없음)	

8.2.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의견수렴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초안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
- 공람기간 : 공고 후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향후 안동시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며, 가능한 계획노선이 위치하고 있는 안동시 내 공람장소를 선정할 계획임
또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전자문서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게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시작일로부터 공람 완료 후 7일 이내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주민의견 제출 : 공람 시작일 ~ 공람 완료 후 7일 이내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3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사항에 주민설명회 개최 사항을 공지할 계획임
- 주민설명회 : 계획노선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구역 내에서 1회 이상 실시 예정

8.2.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⑤항
- 급회 계획노선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 다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⑤항에 제시된 요건이 충족 될 경우 협의기관과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른 절차 생략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임
 - 제25조 제①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제25조 제②항 : 초안 작성,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주민에 대한 공고 및 공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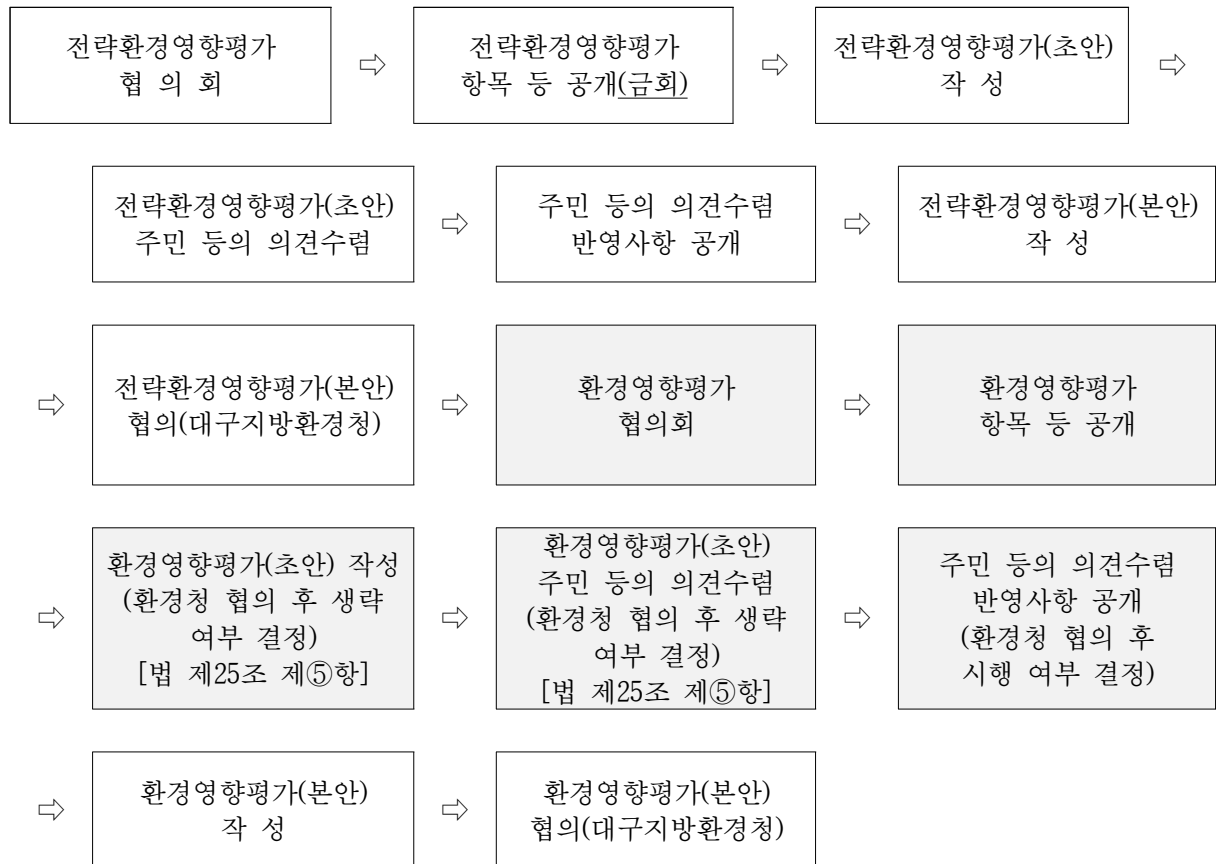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의견수렴 절차 생략 조건	비 고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3년 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
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 계획노선 연장보다 30% 이내에서 사업계획 변경
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 계획노선 연장이 환경영향평가 최소 사업규모(확장 10.0km) 이내에서 계획 변경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 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사항 없음

8.2.4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3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요청 전에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할 계획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요청 전에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할 계획임
- 공개일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요청 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요청 전
- 공개장소 : 승인기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개기간 : 14일 이상 게시

8.3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총괄)

- 상위 계획한 방법에 따라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 모식도는 다음과 같음



제 9 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9.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함
- 심 의 명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심의기간 : 2023. 04. 26. ~ 2023. 05. 15.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위원장 포함 총 12인

[표 9 - 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위원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시설사무관	조00	위원장
2	대구지방환경청	주무관	황00	협의기관 선정위원
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주무관	조00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4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부연구위원	박00	협의기관 추천
5	(주)천일	전무	김00	승인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6	안동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관	정00	관할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7	안동시 풍산읍	상리3리 이장	송00	주민대표
8	안동시 서후면	명1리 이장	권00	주민대표
9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	김00	시민단체

9.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조OO 위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조OO위원님의 의견없음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환경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2030 부산세계박람회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p> <p>대구지방환경청</p>  </div> <p>수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회신[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공사]</p> <p>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3483(2023.4.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심의 요청한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불일과 같이 회신하오니, 평가서 작성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붙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1부.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대구지방환경청장</p>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주무관</td> <td>황이정</td> <td>주무관</td> <td>김연정</td> <td>과장</td> <td>김영성</td> <td>전화: 2023.5.15</td> </tr> <tr> <td>협조자</td> <td colspan="6"></td> </tr> <tr> <td>시행</td> <td>환경평가과-2937</td> <td>집수</td> <td>도로계획과-4011</td> <td colspan="3">(2023.5.16)</td> </tr> <tr> <td>우</td> <td>42768</td> <td>대구시</td> <td>달서구</td> <td>회현로 301</td> <td>청부대구지방합동청사</td> <td>대구지방환경청</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http://me.go.kr/daegu</td> </tr> <tr> <td>전화번호</td> <td>053-230-6473</td> <td>팩스번호</td> <td>053-785-1126</td> <td colspan="3">/ aovnaapp08@me.go.kr / 비공개(5)</td> </tr> </table>	주무관	황이정	주무관	김연정	과장	김영성	전화: 2023.5.15	협조자							시행	환경평가과-2937	집수	도로계획과-4011	(2023.5.16)			우	42768	대구시	달서구	회현로 301	청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지방환경청							http://me.go.kr/daegu	전화번호	053-230-6473	팩스번호	053-785-1126	/ aovnaapp08@me.go.kr / 비공개(5)			<div style="text-align: center;"> <p>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p> <p>[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공사]</p> </div>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아래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동 계획과 관련된 상위계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계획구간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중점 검토하여야 함. ○ 본 계획을 입안하는 기관에서는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반영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토지이용 구상안 및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비교를 위하여 3개의 대안종류(계획 수립·미수립, 입지별 대안, 개발시기)를 제시(69~77쪽)하였으나, 입지별 대안에서 사회적·환경적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대안을 우선선정한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환경적 측면을 중점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근거로 최적의 노선계획을 수립 ○ 선역권 통과구간의 경우 사업노선과 인접하여 풍산중·고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학교 거족면적이 큰 비교1안을 선정한 비(71~72쪽), 주민의견 수립 시 급회 사업계획에 대하여 입지선정 단계에서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요함 것으로 판단됨.
주무관	황이정	주무관	김연정	과장	김영성	전화: 2023.5.15																																					
협조자																																											
시행	환경평가과-2937	집수	도로계획과-4011	(2023.5.16)																																							
우	42768	대구시	달서구	회현로 301	청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지방환경청																																					
						http://me.go.kr/daegu																																					
전화번호	053-230-6473	팩스번호	053-785-1126	/ aovnaapp08@me.go.kr / 비공개(5)																																							
<p>2.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항목별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 중 일부 평가항목의 경우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으로 설정한 비(26~28쪽),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p>3.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 선정 시 토양, 친환경적 자연순환 항목의 경우 현황조사 항목으로 결정하였으나(83쪽) 기존 도로 철거 등에서 다량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비, 토양, 친환경적자연순환 항목은 중점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여 영향·예측, 환경보전목표 등의 수립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노선과 중앙고속도로가 인접하여 교차되는 구간(소용·전동 축적 NV-7, NV-8)의 경우 기존 고속도로 소용에 급회 확장계획(광복 4차선 → 6차선)으로 운영 시 소용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비, 면밀한 영향 예측(3D 소용모델링 적용 등 검토) 및 필요성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제시하였으나(3-5쪽), 도로사업의 특성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노선안이 확정되기 전으로 급회 전략환경평가 평가준비서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도로사업은 운영 시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분야에서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학교, 병원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코르도 향후 노선이 선정되어 구체적인 실시단계가 확정되면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절차(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를 실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별표5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제157)」 제1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1항 평가준비서 작성, 방법 참조 <p>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또는 공청회 생각과 관련된 사항은 평가서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 	<p>의를 통해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각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회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영향권 내 경운시설, 보호·배려를 요하는 시설 등의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설명회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으로 인한 지역적 환경영향을 알기 쉽도록 전분용어, 수치, 조사 결과 등을 순화한 「평가요약서(사전·그림 활용, 수치 비교 등)를 작성·제공하여야 함. <p>5.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이 추가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저가발주로 인한 평가서 부실작성을 예방하고자 평가 용역의 저가발주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서에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을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창출을 위한 운영지침(2.10. 환경부)」 참조 ○ 각종 도면, 사진 등은 육안판독이 용이하도록 색채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별래를 명시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right;">2023. 5. .</p> <p style="text-align: right;">대구지방환경청 심의위원 황 [Redacted]</p>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공사)</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은 기존지선 노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확장 및 교량선지로 인해 횡단하는 3개 하천의 수질 영향, 인근 교육시설에 대한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 노선 인근의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대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3. 계획노선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4. 환경보전방안 및 입지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노선은 3개의 하천을 횡단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해야함 ○ 신역선 통과구간은 인근 교육시설(풍산중고교)과 인접하여 공사 시, 운영 시 대기질과 소음·진동에 취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량 공사 시 및 운영 시에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함 ○ 계획노선 주변(약 23m 이격)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위치하는바 1등급지 주변 지역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7. 약식평가 신청가능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3. 5. 8.</p> <p style="text-align: right;">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박</p>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공사)</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기존도로 확장(4차로→6차로) 계획으로 계획수립에 의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은 수립하여야 함 ○ 계획노선과 인접하여 위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조사범위의 확대를 검토하고, 환경보전목표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향후 평가 절차 진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이 있을 것으로 검토된 경우 평가 범위 및 항목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현지조사를 통해 계획 노선과 인접하여 범정부호종 등의 서식 등이 확인 될 경우 해당종에 대한 보전 목표 및 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조사범위를 확대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계획노선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노선 확장계획으로 인한 파도한 지형 변화 및 사면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역선, 풍산천 등 하천통과 구간에 대해 토사유출, 비점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4. 환경보전방안 및 입지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비교, 입지검토, 시기순서 등의 대안설정에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정량적 예측을 통해 환경목표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함
<p>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항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평가범위 중 동·식물상의 경우 분류군별 150~500m로 설정하고 있으나,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범정부호종 등의 출현시 탄력적 조정이 필요함 <p>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의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p>7. 약식평가 신청가능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p>8.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3. 05. 11</p> <p style="text-align: right;">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김</p>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공사)</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신도청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존도로 확장 사업으로 주변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심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목표를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의 설정은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적절하게 선정하였음 3. 계획노선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4. 환경보전방안 및 입지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대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진행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 안동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공람을 실시하고,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약식평가 신청가능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8.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없음 <p style="text-align: right;">2023. 5. .</p> <p style="text-align: right;">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정</p>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공사)

총괄 의견

- 국도 확장 주변에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목표는 적정하게 설정된 것 같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필요함.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이 적절함.
3. 계획노선 구상안
 - 노리 서안동IC구간, 상리3리 보광레미콘 주변 및 상리과 등 기본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의견서 제출내용을 검토하여 계획노선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보전방안 및 입지대안
 - 공사 중 및 준공 후 국도 주변의 취락지구 등 민가 주변에 비산먼지,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제시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7. 약식평가 신청가능여부
 - 대상 아님.
8. 기타
 - 국도 확장공사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감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여 민원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5.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송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공사)

총괄 의견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제척바람.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적정함.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함.
3. 계획노선 구상안
 - 지락앞(가옥) 리선화 노선설계 바람.
4. 환경보전방안 및 입지대안
 - 운영사 소음 대기건에 대한 환경영향 분석후 민원 발생방지를 고려해바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정밀하게 조사할 요망 (생태 지역도 보존요망)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시행바람.
7. 약식평가 신청가능여부
 - -
8. 기타
 - 제척수입은 주민및 시설 주변환경등에 대해 리선화 되도록 제척바람

2023.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권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공사)

총괄 의견

- 기 건설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므로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지만, 몇가지 지적한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공사 기간 중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사 기간 중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할 방안 마련 필요.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야생동물 보호 구역 2개소 중 인접한 곳이 7.3km 접해 있다고 한다던 야생동물 중 에 따라 행동반경이 거리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주변지역 주민 주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음,진동의 범위를 동일하게 0.3km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이의 대상지역 항목은 적절하다고 봄.
3. 계획노선 구상안
 -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봄.
 - 선형변경 시 적절한 검토 필요.
4. 환경보전방안 및 입지대안
 - 대안의 종류 '수단과 방법'에서 대안설정을 노선 선정 후로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대안설정이 우선할 필요가 있음
 - 동물 이동 통로에 대해 보완 필요(예를 들자면, 로드킬 상습구간 조사 등으로 필요시 이동 통로 추가설치)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항목,범위,방법 등이 적절하게 적용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설명회에 대한 홍보 방법으로 해당 지역 현수막 게시와 문자발송 병행 필요.
 - 해당지역 주민 과반수 이상이 주민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7. 약식평가 신청가능여부
 - 의견수렴결과를 생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2023.05.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김